

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5년 제10차 이사회 회의록

소집통보일		2025.12.9.(화)		
구 분	이 사	감 사	계	
임원정수	9명	2명	11명	
재적임원	9명	2명	11명	
참 석	9명	2명	11명	
불 참	0명	0명	0명	

1. 일 시 : 2025.12.18.(목) 14:00 ~ 18:58

2. 장 소 : 조선대학교 본관 2층 법인회의실(2137호)

3. 임원 참석 현황

- 참석 임원

- 이사 : 이사장 김이수, 이사 김선아, 이사 임동윤, 이사 신윤숙, 이사 이근우, 이사 박미경, 이사 정채웅, 이사 정병준, 이사 조성철 (이상 9명)

- 감사 : 감사 이현필, 감사 김정호 (이상 2명)

- 불참 임원

- 없 음

4. 배석 현황

- 법 인 사 무 처 : 사무처장 정권철, 법인팀장 조은정, 사업운영팀장 고형, 기획 감사팀장 박승모

(법인팀 윤진혁은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배석함)

- 조 선 대 학 교 : 총장 김춘성, 글로벌인문대학 국어국문학부 교수 강희숙, 기획 처장 최홍석, 교무처장 강혁신, 총무관리처장 김영목, 시설관리 부처장 송문교, SW산학협력센터장 양희덕, 전략기획팀장 신용섭,

재정예산팀장 송병준

- 조 선 이 공 대 학 교 : 총장 조순계, 교무입학처장 이응재, 교무팀장 박정철
- 조 선 간 호 대 학 교 : 총장 박명희, 교학처장 심정신, 교학팀장 김상일

5. 심의·의결 안건

- (1) 조선간호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안)
- (2) 조선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계획(안)
- (3) 조선이공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안)
- (4) 조선대학교 교원 보직 임명(안)
- (5)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개정(안)
- (6) 조선대학교 직제 규정 개정(안)
- (7) 조선대학교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 및 관리업무수당 지급 세칙 개정(안)
- (8) 조선대학교 2025학년도 직원노동조합 임금 협약(안)
- (9) 조선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 (10) 조선대학교 석좌교수 추대(안)
- (11)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안)
- (12) 조선대학교 건축물 증·신축(안)
- (13) 조선대학교 고정자산 폐기(안)
- (14) 조선대학교 교육용기본재산(토지) 처분(안)
- (15) 학교법인조선대학교 합작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협약(안)
- (16)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

6. 보고사항

- (1) 조선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모집정원 조정 보고
- (2) 산하학교 교원 임용보고
- (3) 2025학년도 중간감사 결과보고

7. 회의 내용

- 성원보고 및 개회 선언 : 정권철 사무처장이 성원을 보고(이사 9명, 감사 2명 출석)하

자, 김이수 이사장이 이를 확인하고 「정관」 제32조(이사회 의회 및 의결정족수)에 의거하여 회의를 선언함

■ 전차 이사회 회의록 보고 : 정권철 사무처장이 전차 이사회 회의록의 주요 결의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김이수 이사장이 이사들의 의견을 물어 동의 여부를 확인함

1호 의안. 조선간호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간호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심정신 교학처장이 「교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10조(징계요구) 등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교원 징계를 제청한다며 제청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 징계 제청 :

논의사항 : 김이수 이사장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비위 사실을 뒷받침할 보강 증거가 부족하고 현재 사건 당사자 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1심 판결 전까지 추가 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결 결과를 지켜본 후 보강 증거가 새롭게 제출되는 경우 징계 여부를 재검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안건을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자, 임원 일동이 이에 동의함

기타 요청사항 : 김이수 이사장이 인권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실효성 있는 쇄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동의가 없음 확인 후) 조선간호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보류함

2호 의안. 조선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계획(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계획(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이응재 교무처장이 각 학과 별로 채용 분야를 신청받아 총 2개 분야 2명을 선정하여 202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채용 분야 승인을 제청하고자 한다며 제청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사항 : 임동윤 이사가 지난 교원 공채에서 채용을 하지 못했는데 실제 채용이 가능한지 우려를 제기하자, 조순계 총장이 급여 등의 처우 여건으로 지원자가 많지 않은 현실을 설명함. 이어, 김이수 이사장이 이미 한 차례 채용 승인이 된 사안인 만큼 한 차례 더 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이사들의 의견을 구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계획(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계획’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보고사항 1. 조선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모집정원 조정 보고

보고사항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모집정원 조정 보고를 상정함

보고 내용 : 이응재 교무입학처장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정원외) 중 사회복지학과 입학정원 5명을 증원하였다며 세부 조정 내역과 조정 사유에 대해 보고함

결의사항 : 조선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모집정원 조정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함

3호 의안. 조선이공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이공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이용재 교무입학처장이 「교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10조(징계요구) 등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교원 징계를 제청한다며 제청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 징계 제청 :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이공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이공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보고사항 2. 산하학교 교원 임용보고 (조선이공대학교)

보고사항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산하학교 교원 임용보고 (조선이공대학교)를 상정함

보고 내용 : 이용재 교무입학처장이 「정관」 제40조(임용) 등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교원을 임용하였다며 임용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함

- 조선이공대학교 재임용 : 

결의사항 : 산하학교 교원 임용보고 (조선이공대학교)는 원안대로 접수함

4호 의안. 조선대학교 교원 보직 임명(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 교원 보직 임명(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김춘성 총장이 「정관」 제40조(임용) 제5항에 따라 부총장 보직 임명에 대한 동의를 제청하고자 한다며 제청 사유 및 제청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 부 총 장 : 글로벌인문대학 국어국문학부 교수 강희숙

□ 강희숙 교수가 부총장 임용 후보자로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함

논의사항 :

- ① 김이수 이사장이 부총장 직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후보자가 과거 사업단 운영 과정에서 구성원과 내부 갈등이 있었던 점을 우려하며, 향후 부총장으로서 각 행정부서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질의함. 이에 강희숙 교수가 대규모 장기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인적 구조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며 연구·교육·지역 연계 성과를 창출해 왔으며 향후에도 대학이 요구하는 역할에 헌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이어 각 부서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대학 발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총장을 적극 보좌하겠다고 답변함.
- ② 신윤숙 이사는 부총장의 역할은 대학 전반 행정 운영에 관한 비전 제시임에도 후보자가 특정 주제 중심의 소견만 제시하여 행정 경험 부족을 보완할 포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대학이 직면한 행정 현안과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강희숙 교수가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된 행정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총장의 마스터플랜을 존중하되 현장 행정 인력과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중간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고, 대학의 재정 여건과 지역·산업 여건을 반영한 행정 운영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③ 박미경 이사가 후보자의 내치 및 조직 안정 역할에 대한 기대와 재난 인문학 사업을 통한 지역 사회와의 연계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대학 차원의 지역 기여 확대 방안을 질의하자, 강희숙 교수가 대학원 개설과 관련 조직을 통해 지속적 교육·연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함. 이에 신윤숙 이사가 조직 중첩과 확대가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행정 조직 확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함
- ④ 임동윤 이사가 부총장 직책은 독자적으로 앞서 나서는 자리가 아니라 총장을 보좌하며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조직의 화합을 이끄는 역할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총

장의 권한을 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함. 이어 후보자가 총장과 연령·경력 차이가 크지 않고 그간 호흡을 맞춰온 점을 언급하며, 대형 사업 수행 경험은 향후 글로벌대학30 사업 추진에 강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함. 다만 아직 업무 파악 이전 단계인 만큼, 부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총장과 협의해 조속히 업무를 파악하고 대학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함

- ⑤ 조성철 이사가 부총장은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업무 전반을 폭넓게 파악하고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에 강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역할 인식이 보다 분명히 제시되었으면 좋겠다고 조언함. 이어 김정호 감사는 학문적 성과는 충분하나 행정가로서의 역할은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진다고 지적하며, 향후 실무를 통해 이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언급함. 이에 강희숙 교수는 총장을 충실히 보좌하면서 대학의 여러 사업을 융합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⑥ 김선아 이사가 후보자가 대학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대학30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장이 세부 내부 현안까지 챙기기 어려운 만큼 부총장이 각 부처·단과대학·학과별 복잡한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화합을 이끌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소견에서 드러나지 않아 아쉬웠다고 지적함. 이어 내부 구성원 갈등과 대학원 운영 등 민감하지만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지혜로운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강희숙 교수가 향후 여러 워크숍과 논의를 통해 사업 전반과 핵심 과제를 파악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단계적으로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⑦ 이현필 감사는 오랜 조직 특성상 잘못된 관행과 관습이 일부 고착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글로벌대학30 및 RISE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치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구성원 간 갈등 해소의 핵심 수단으로서 지속적인 소통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강조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교원 보직 임명(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교원 보직 임명 동의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5호 의안.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개정(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개정(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최홍석 기획처장이 글로컬대학 거버넌스 체계 개편 추진을 위해 관련 직제를 신설하고자 한다며 ①행정부총장 · 글로컬부총장 · 대외부총장 신설, ②글로컬대학추진단 및 산하 웰에이징기술융합원 · IR성과관리센터 신설, ③총괄총장 직제 신설 등 주요 개정 내용과 개정 사유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사항 :

- ① 김이수 이사장은 ‘IR성과관리센터’ 설치 배경과 기존 기획처 ‘IR성과관리팀’과의 관계가 모호하다고 지적하였고, 김선아 이사도 성과관리센터를 별도로 두는 조직 구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이에 대해 최홍석 기획처장은 글로컬대학30 추진 과정에서 자체평가위원회-IR성과관리센터-글로컬 성과관리위원회로 이어지는 3단계 성과 모니터링·환류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IR성과관리센터’는 국책사업 성과 분석과 정책 연계를 담당하고 기획처 ‘IR성과관리팀’은 교내 및 대외 평가 대응을 맡는 이원화 구조라고 설명함. 이어 ‘IR성과관리팀’의 경우 ‘성과관리팀’으로 개칭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함. 김춘성 총장이 글로컬대학30 및 RISE 사업 평가 기준에 따라 높은 배점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직 구조로,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직이 확대된 측면이 있음을 설명함
- ② 임동윤 이사가 글로컬대학30 사업이 5년 한시 사업인 점을 들어 ‘글로컬부총장’ 직제가 한시적으로 운영될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글로컬부총장 직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신설되는 ‘행정부총장’은 기존과 같이 ‘부총장’ 명칭을 유지하게 하여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함. 이에 김춘성 총장은 ‘행정부총장’ 산하에 기존 교무·행정 업무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글로컬대학30 및 RISE 사업 또한 ‘글로컬부총장’에게 전적으로 집중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함. 이어 임동윤 이사는 대형 국책사업 수행의 특성상

예산을 보유한 조직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조직 간 역할 중첩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함. 이에 정채웅 이사가 정관 개정안에서 부총장을 ‘행정부총장’·‘글로벌부총장’·‘대외부총장’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행정부총장’의 명칭을 ‘부총장’으로 변경할 경우 규정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함.

③ 김선아 이사가 ‘행정부총장’이라는 명칭이 역할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한다며 학사·교육 중심의 직명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자, 김춘성 총장은 학사·교육 관련 업무는 글로벌 부총장이 관할하는 글로벌대학30·라이즈 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어 해당 직명으로 변경할 경우 각 부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나타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함. 이어 ‘글로벌부총장’을 신설하되, 별도로 임명하지 않고 당분간 총장이 직접 맡아 안정화시킬 예정이라고 하며, 사업 수행 평가 대응을 위해 조직 자체는 구성해야 하므로 이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함

④ 조성철 이사가 우리 대학이 국립대와 사립대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기 어려운 특수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발언하며, 향후 대외 환경 변화와 사업 확장을 고려할 때 대외협력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언급함. 이어 단순한 보직 부여 방식으로는 역량 있는 외부 인재를 영입하기 어렵다며, ‘대외부총장’의 관할 조직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경험과 경륜을 갖춘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개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김이수 이사장이 16시 05분에 정회를 선언함>

<김이수 이사장이 16시 13분에 회의를 속개함>

6호 의안. 조선대학교 직제 규정 개정(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 직제 규정 개정(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최홍석 기획처장이 2025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확정 및 대학 주요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직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① IR성과관리센터 및 글로컬대학추진단, 웰에이징기술융합원 등 글로컬대학30 사업 관련 조직 신설, ② 행정부총장·글로벌부총장·대외부총장 직제 신설, ③ RISE사업단 직제 개편 및 각 센터를 본부 체계로 전환, ④ SW중심대학사업 종료 이후 AI·SW 교육 전담을 위한 AI·SW융합원 신설, ⑤ ‘역사관’을 ‘조선대학교 역사관’으로 명칭 변경 등 주요 개정 내용과 개정 사유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사항 :

- ① 김선아 이사가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을 5개 센터로 세분화한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직 과다를 우려하자, 양희덕 센터장이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에 따라 사업 내용이 5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다수 대학이 동일한 구조로 운영 중이며, 보직자의 경우 센터장 5명과 단장 1명으로 최소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함
- ② 김선아 이사가 라이즈 사업단 내 여러 센터를 본부로 변경한 이유와 실질적 변화가 무엇인지 질의하며, 단순 명칭 변경에 불과하다면 조직 확대처럼 보일 우려와 함께 조직 체계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자, 최홍석 기획처장이 기존 센터 체계에서 보직자 겸직으로 인해 업무 과중과 의사결정 지연 문제가 발생한 바 있어, 본부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결재 단계를 축소하고 책임과 권한을 본부장에게 집중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함. 이어 김춘성 총장이 본부 전환 및 본부장 임명을 통해 보직자 겸직으로 인한 업무과중을 해소하고 예산 집행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부연함. 이에 김선아 이사가 향후 조직 명칭과 체계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직제 규정 개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직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7호 의안. 조선대학교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 및 관리업무수당 지급 세칙 개정(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 및 관리업무수당 지급 세칙 개정(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최홍석 기획처장이 2025년 글로벌대학 본지정 확정 및 주요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직제 신설·개편 사항을 보직자 수당 체계에 반영하고자 한다며, ① 글로벌대학추진단장·부단장, 웰에이징기술융합원장·부원장, IR성과관리센터장·부센터장 등 보직 신설에 따른 직책수행판공비 지급 대상 추가, ② RISE사업단장·부단장 및 각 본부장 보직 신설에 따른 지급 기준 반영, ③ AI·SW융합원장·부원장 신설에 따른 직책수행판공비 및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 추가 등 주요 개정 내용과 개정 사유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사항 :

- ① 김이수 이사장은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구분표」에서 ‘SW중심대학사업단장’이 삭제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자, 최홍석 기획처장이 ‘SW중심대학사업단장’이 새로 신설되는 ‘AI·SW융합원장’을 겸직하게 되어 AI·SW융합원장이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으므로 해당 보직을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설명함. 이에 조은정 법인팀장은 ‘SW중심대학사업단장’ 보직이 존속하고 있는 이상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하였으며, 김이수 이사장이 대학에 확인한 후, 해당 사항을 원래대로 복구하기로 함.
- ② 김춘성 총장이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 지급 기준표」와 관련하여 글로벌대학추진단장은 처(실)장보다 하위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에 따라 글로벌대학추진단장의 지급 기준을 한 단계 하향조정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 및 관리업무수당 지급 세칙 개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 및 관리업무수당 지급 세칙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함

8호 의안. 조선대학교 2025학년도 직원노동조합 임금 협약(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 2025학년도 직원노동조합 임금 협약(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최흥석 기획처장은 직원노동조합과의 2025학년도 임금 협약 잠정 합의에 따라 ① 기본급은 2025년 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되 2025년 9월부터 적용하고, 2026학년도에는 2026년 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2026년 3월부터 적용하며, ② 정근수당은 근속연수별 적용 비율을 조정하고, ③ 가족수당은 인상하는 내용을 잠정 합의하였다며,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사항 :

- ① 김이수 이사장이 이번 임금협약에서 2025학년도 임금 인상 적용 시점은 2025년 9월 임에도 2026학년도의 경우 2026년 3월부터 인상을 적용하는 잠정 합의가 포함되었다고 하며, 이는 기존 관행에 비해 약 6개월분 인건비 부담이 추가되고 직원뿐 아니라 교원, 산하 다른 대학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함. 이어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되 적용 시점을 9월로 유지해 온 기존 관행이 노사 간 신뢰를 유지해 온 미덕이었다고 언급하며, 글로벌대학 선정 이후 재정 여유가 있다는 인식으로 임금 구조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김춘성 총장은 과거에는 교원 노조가 존재하지 않아 직원 노조의 임금협약이 자동 적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교원 노조와 직원 노조 각각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직원 노조의 경우 글로벌대학30 사업 선정에 대한 기여를 이유로 차년도 임금 인상을 조기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 이러한 사정으로 2026학년도 임금 인상을 조기에 상정하게 되었다고 경위를 설명함
- ② 김이수 이사장이 재정 여건상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상 자체는 이해하되 적용 시점 변경은 부담이 크고 산하 타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을 우려함. 2026학년도 임금 인상을 2026년 3월부터 적용하는 잠정 합의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

다고 하자, 김춘성 총장이 해당 부분을 이사회에서 보류하면 다시 재협상하겠다고 답변함

- ③ 정채웅 이사가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노동관계 법령상 원칙적으로 1년이며, 내년에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하더라도 차년도에 다시 임금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 이에 김춘성 총장은 과거에는 임금협약을 3년 단위로 체결한 사례도 있었으며, 단체협약상 학기 이전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노조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운영해 온 경과가 있다고 설명함. 정채웅 이사가 임금협약은 최저임금 및 생계비 결정 구조상 1년 단위로 운영되는 것이 법령상의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함. 이에 김이수 이사장이 2025학년도 임금 잠정합의 부분은 승인하되, 2026년도 임금 잠정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2026학년도에 재협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자, 이사 일동이 이에 동의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2025학년도 직원노동조합 임금협약(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2025학년도 직원노동조합 임금협약 합의서’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함

9호 의안. 조선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상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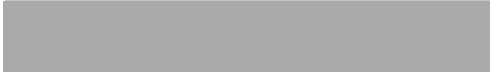
제안 설명 : 최홍석 기획처장은 직원노동조합과의 2025학년도 임금 협약 잠정 합의에 따라 2025년 9월부터 ① 기본급은 2025년 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고 ② 정근수당은 근속연수별 적용 비율을 조정하며, ③ 가족수당은 인상하는 내용을 교직원 보수규정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10호 의안. 조선대학교 석좌교수 추대(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 석좌교수 추대(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강혁신 교무처장이 「조선대학교 석좌교수 세칙」 제3조(자격) 등에 따라 해당 인사를 석좌교수 추대하고자 한다면 제청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 석좌교수 추대 : 

논의사항 :

- ① 정채웅 이사가 석좌교수는 국제적으로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해당 분야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학자로 한정된다는 세칙을 근거로 해당 건을 추진하려면 세칙 개정 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발언하자, 강혁신 교무처장이 이력과 공헌을 종합할 때 현행 기준에서도 부적합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교무처의 판단을 설명함
- ② 김이수 이사장이 해당 인사가 명예학박사를 받은 점과 학문적 소양을 갖춘 인물이라는 점을 언급함. 이어 김춘성 총장이 해당 인사에게 명예학 박사를 수여한 것은 특정 분야에서의 공헌을 인정한 결과라며, 석좌교수 임용의 정당성을 설명함
- ③ 조성철 이사가 해당 건에 대해 ‘관련 분야 공헌’으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며 석좌교수 임명을 승인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정채웅 이사가 세칙상 자격 요건이 명확함에도 이를 달리 해석할 경우 향후 법적 문제 제기가 우려된다고 발언함. 이어 정병준 이사가 대학이 이미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점을 고려할 때 학자가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수 대학에서도 유사한 석좌교수 추대 사례가 있다고 설명함
- ④ 정채웅 이사가 개인에 대한 반대는 아니며 공헌도 인정하지만, 외부 문제 제기 가능성에 대비해 방어 논리가 필요하다고 자격 요건을 ‘국내외 학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완화하자고 제안하자, 김이수 이사장은 특정 인사 임명을 위해 세칙을 개정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현행 규정을 유지한 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석좌교수 추대(안)은 출석이사 9명 중 8명(김이수 이사장, 김선아 이사, 임동윤 이사, 신윤숙 이사, 박미경 이사, 이근우 이사, 조성철 이사, 정병준 이사)의 찬성, 1명(정채웅 이사)의 기권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석좌교수 추대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11호 의안.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강혁신 교무처장이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제40조(임용)에 따라 해당 교원을 면직임용하고자 한다면 제청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 면직 임용(의원면직) :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보고사항 2. 산하학교 교원 임용보고 (조선대학교, 산하 중·고등학교)

보고사항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산하학교 교원 임용 보고를 상정함

보고 내용 : 강혁신 교무처장이 「정관」 제40조(임용) 등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교원을 임용하였다며 임용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함

- 조선대학교 휴직 : 

보고 내용 : 조은정 법인팀장이 「정관」 제40조(임용) 등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교원을 임용하였다며 임용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함

-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기간제교사 임용 : 

-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기간제교사 임용 : 

결의사항 : 산하학교 교원 임용보고 (조선대학교, 산하 중·고등학교)는 원안대로 접수함

추가 보고사항 : 강혁신 교무처장이 전국대학 의예과 현황 및 우리대학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실 현황 자료를 보고함

추가 보고사항에 대한 논의사항 : 임동운 이사가 교무처가 제출한 의과대학 전임교원 현황 자료가 타 대학과의 비교 기준과 조사 방식이 부정확하고, 연구교수 등의 인력을 기초의학 교원 수에 포함시키는 등 자료가 왜곡되어 기초의학 교수들이 마치 수업을 거의 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강하게 지적함. 아울러 해당 자료는 현장 실습 여건과 학생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하며, 대학 차원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함. 또한 향후 교원 총원 및 시수 논의 시에는 현장 실태를 직접 확인한 후 동일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당부함

12호 의안. 조선대학교 건축물 증·신축(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 건축물 증·신축(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최홍석 기획처장은 융합학과 신설 확대에 따른 강의공간 부족과 지역산업 연계 바이오·헬스케어 연구 거점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건축물 증·신축을 추진하고자 한 다며 융합전공 학생 교육을 위한 서석홀 증축, 웰에이징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혁신 거점 조성을 위한 웰에이징 바이오연구동 신축 등 증·신축 주요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사항 :

- ① 임동윤 이사가 ‘웰에이징 바이오연구동’ 신축 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건물이 글로컬대학30 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활용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비가 아닌 교비로 신축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자, 김춘성 총장이 글로컬대학30 사업비 집행 지침상 건축 비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여 교비로 건물을 신축하되, 내부 시설은 글로컬대학30 사업비로 충당함으로써 교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라고 설명함
- ② 임동윤 이사는 신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자연대학 건물의 공기 순환 문제가 현재도 심각한 상황에서 인근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해당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사전에 공기 순환 문제에 대한 검토와 공기 소통 구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발언함. 이어 자연대학 건물의 경우 중간에 공기 통로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자, 송문교 시설관리부처장이 구조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벽체를 개방하는 등 공기 순환이 가능하도록 추후 검토하겠으며, 실험실 공간 확보 이후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함
- ③ 김선아 이사가 자연대 건물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 증축보다는 신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언급하며, 현재 주차장 부지에 자연대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건물은 장기적으로 철거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를 제안함. 이에 임동윤 이사는 과거 인접 건물 신축 시 공기 순환 문제로 큰 반발이 있었던 점을 들어 추가 신축 역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이에 송문교 시설관리부처장이 해당 부지가 지형상 자연대보다 낮은 위치에 입지하여 있어 환기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일정 층수까지는 공기 순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건축물 증·신축(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건축물 증·신축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13호 의안. 조선대학교 고정자산 폐기(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 고정자산 폐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김영목 총무관리처장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제32조(대손상각등)에 따라 사용연한 초과한 집기비품 및 기자재(CCD CAMERA 외 140건)에 대해 폐기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폐기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고정자산 폐기(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고정자산 폐기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14호 의안. 조선대학교 교육용기본재산(토지) 처분(안) (철회)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 교육용기본재산(토지) 처분(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김영목 총무관리처장이 조선대학교 교육용기본재산(토지) 처분(안)은 처분 대상인 토지 중 일부 필지가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아 재감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해당 안건은 철회를 요청한다고 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교육용기본재산(토지) 처분(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대학 측의 안건 상정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결함

보고사항 3. 2025학년도 중간감사 결과보고

보고사항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2025학년도 중간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함

보고 내용 : 이현필 감사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1조와 「정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0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및 설치학교인 조선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부속중학교, 여자중학교, 그리고 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치과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의 재산 상황, 회계에 대한 감사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

였다고 하며 각 산하기관의 중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함

결의사항 : 2025학년도 중간감사 결과보고는 원안대로 접수함

15호 의안. 학교법인조선대학교 합작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협약(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학교법인조선대학교 합작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협약(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고청 사업운영팀장이 합작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협약(안)을 마련하였다고 하며, ① 합작투자법인의 형태, 자본금, 출자비율에 관한 사항, ② 이사회 구성, 대표이사 선임 및 감사 추천 등 지배구조와 경영권에 관한 사항, ③ 매출 목표, 이익 처분 등 사업 수행과 관련한 주요 조건 등 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사항 :

- ① 박미경 이사가 합작투자법인의 수익 배당금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하자, 정권철 사무처장이 배당금은 전액 병원과 산하 학교에 전출금으로 지급하도록 이전 이사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세부 지급 비율의 변경은 추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함
- ② 이현필 감사가 합작투자법인 이사회 구성상 우리 법인 측 이사가 2인에 그치는 구조에서 주요 의사결정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고, 이에 정권철 사무처장이 약사법상 우리 법인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어 과반 확보가 불가능한 구조이며 추천 이사 2인과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함. 이어 정채웅 이사가 주식 구조상 우리 법인 측 지분 중 일부가 의결권 없는 우선주임을 언급하며 파트너 법인이 주요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자, 고청 사업운영팀장이 약사법 위반 우려로 다수 학교법인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함
- ③ 임동윤 이사가 합작도매법인과 학교법인의 관계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우려를 제기하자, 고청 사업운영팀장이 현재 공정거래법상 문제로 지적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함

- ④ 조성철 이사가 이번 협약안이 구조적으로는 잘 마련됐지만, 향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발언하며, 법적 한계 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익 창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특히 의약품 외에도 의료기기·소모품 등 수익사업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인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주문함
- ⑤ 이근우 이사가 합작투자법인 파트너 법인과 의 협상 경위를 설명함. 이에 정채웅 이사가 학교법인이 주식회사에 출자하고 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법적 문제 소지가 없는지 질의하자, 이근우 이사는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타 대학 선례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함. 이어 임동윤 이사의 수익 배분 및 지분 구조 관련 질의에 대해, 이근우 이사는 보통주와 우선주 비율은 상법상 특별결의를 저지하기 위한 장치로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함
- ⑥ 정채웅 이사가 협약안 상의 주식 처분 제한 조항으로는 상법상 주식 양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3자에게 주식이 양도될 경우를 대비한 손해배상 조항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근우 이사는 해당 제한은 상법상의 효력과는 별도로 당사자 간 협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설명함. 이어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자, 김이수 이사장이 현재는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 단계이며 이사회 결의 이후 세부 문구를 정리할 것이라고 정리하고, 설령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발언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학교법인조선대학교 합작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협약(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합작투자법인 설립 협약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16호 의안.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정권철 사무처장이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로 김이수 이사장, 김선아 이사, 임동윤 이사를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김이수 이사장, 김선아 이사, 임동윤 이사가 날인하기로 가결함

폐회 선언

폐회 선언 : 김이수 이사장이 더 이상의 질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함



【결 의 사 항】

1. 조선간호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보류하다.
2. 조선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계획(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계획’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3. 조선이공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이공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4. 조선대학교 교원 보직 임명(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교원 보직 임명 동의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5.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개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6. 조선대학교 직제 규정 개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직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7. 조선대학교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 및 관리업무수당 지급 세칙 개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 및 관리업무수당 지급 세칙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다.
8. 조선대학교 2025학년도 직원노동조합 임금협약(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2025학년도 직원노동조합 임금협약 합의서’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다.

9. 조선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0. 조선대학교 석좌교수 추대(안)은 출석이사 9명 중 8명(김이수 이사장, 김선아 이사, 임동윤 이사, 신윤숙 이사, 박미경 이사, 이근우 이사, 조성철 이사, 정병준 이사)의 찬성, 1명(정채웅 이사)의 기권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석좌교수 추대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1.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2. 조선대학교 건축물 증·신축(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건축물 증·신축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3. 조선대학교 고정자산 폐기(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고정자산 폐기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4. 조선대학교 교육용기본재산(토지) 처분(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대학 측의 안건 상정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결하다.
15. 학교법인조선대학교 합작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협약(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합작투자법인 설립 협약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6.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김이수 이사장, 김선아 이사, 임동윤 이사가 날인하기로 가결하다.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함.

2025. 12. 18.

이	사	장	김 이 수	김이수
이		사	김 선 아	김선아
이		사	임 동 윤	임동윤
이		사	신 윤 숙	신윤숙
이		사	이 근 우	이근우
이		사	박 미 경	박미경
이		사	정 채 응	정채응
이		사	정 병 준	정병준
이		사	조 성 철	조성철
감		사	이 현 필	이현필
감		사	김 정 호	김정호

타

타

타